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해당없음)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 인도네시아 주요 인증 및 허가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BPOM) 수입식품등록
 -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인니 식품의약품(BPOM)에 수입식품 등록이 필요
 - 일반 가공식품(ML) : 섭취 제한이 없는 가공식품으로 일반 식품, 기타식품, 혼합음료, 육류 가공식품, 차류 캔디 등이 해당
 - 전통의약품(TI) : 주로 허브 원료(한약재 등)가 주 구성 제품인 경우
 - 건강기능식품(SI) : 전성분 구성에 비타민 및 미네랄, 아민류가 포함되며, 식품 사용 기준 초과 제품 대상 또는 재료의 기능성이 포함된 경우

<수입식품 등록 절차>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 인도네시아는 국가표준(Standard National Indonesia: SNI)을 강화하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2022년 5월 기준 301품목이 SNI 강제인증 적용 대상 품목(자발적 인증품목은 7천여개이상)이며, 해당 품목은 SNI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통관이 제한
- 식품의 경우 물, 밀가루, 정어리/고등어/참치 캔제품이 해당됨
- 제품인증 기간은 4년, 4년째 정기공장심사 3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하면 첫해와 동일하게 현장실사를 실시
- 인도네시아 SNI 심사 기관인 Lspro는 국영 기관 산하 심사 검사기관과 사기업으로 나뉨. 매년 1회 정기공장심사를 실시, 정기공장 심사 2~3개월 전에 변경 및 추가신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할랄인증

- 2024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이 의무화 예고 되었으며, 할랄인증청(BPJPH)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할랄인증 신청

* 할랄인증 신청 : <https://ptsp.halal.go.id/>

- 2022년 3월 1일부로 신규 할랄 로고 발표 및 적용



Masih dapat berlaku selama 5 tahun sejak diundangkan perka no. 39 th 2021 tanggal 2 februari 2021

2021년 39호 규정에서 MUI 할랄 로고의 기존 사용자는 2026년 2월까지 사용 가능

Penggunaan Logo halal baru mengacu pada keputusan Kepala BPJPH No. 40 Tahun 2022 ditetapkan tanggal 10 februari 2022

BPJPH 규정 2022년 40호 할랄 로고 발표
2022년 3월 1일부터 신 로고 사용 적용

○ 선적전검사

- 음료와 건강기능식품, 아이스크림, 유제품 등이 대상이며, 선적 희망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신청, 제품의 상차 작업 시 검사관 확인(물품 및 등록서류)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수코핀도와 민간 기업 ANINDYA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의 SGS와 TUV에서 검사를 대행

○ 인도네시아 무역부 수입허가(쿼터)

- 2016년 2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로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국 식품안전 담당 기관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인도네시아 농업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신선농산물 수출 가능

①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 ②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 한국의 경우 농관원 등에서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을 받아 수출 중
- 한국의 경우 수출 가능한 품목은 22개 품목이며, 포도, 사과, 감귤 등은 수입허가(쿼터)를 받아야 함

< 분석성적서(COA) 발행 가능한 22개 품목 >

구분	품목명(영문)	품목명(한글)
1	Grapes	포도(쿼터)
2	Apple	사과(쿼터)
3	Rice	쌀(쿼터)
4	Citrus Fruit	유자
5	Chili Peppers	고추(쿼터)
6	Chili Peppers(dried)	건고추
7	Sweet Corn(corn on the cob)	옥수수(대가 있는)
8	Sweet Corn(Kernel)	옥수수 알갱이
9	Mushrooms	버섯류
10	Oranges	오렌지(쿼터)
11	Mandarin	감귤(쿼터)
12	Potatoes	감자(쿼터)
13	Cabbage	양배추

14	Soybean	콩(대두)
15	Melon	멜론(꺾터)
16	Peach	복숭아
17	Persimmon	감
18	Pear	배
19	Sweet Pepper	파프리카
20	Strawberry	딸기
21	Maize Flour	옥수수 가루
22	Tea(Green and black)	차(녹차, 홍차)

* 꺾터 표시 품목은 무역부로부터 수입허가(꺾터)를 받아야 수출 가능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

□ 식품의약품(BPOM), 하겐다즈 바닐라 1급 발암물질 검출 “회수 명령”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BPOM)은 Haagen-Dazs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1급 발암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EtO)가 허용 한도를 초과했다고 리콜 명령을 내렸음



-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 리콜 대상 제품은 프랑스 산 473ml 파인트와 100ml 미니 컵에 포장된 아이스크림 그리고 9.46리터 캔임

- 에틸렌옥사이드 화학 물질은 훈증제로 작용하는 살충제로, 에틸렌 글리콜 (부동액), 섬유, 세제, 용제, 의약품, 접착제 및 기타 제품의 제조에 사용됨
- 소량의 산화에틸렌은 훈증제, 식품(향료) 및 화장품의 살균제로 사용되고, 에틸렌옥사이드는 병원에서 수술 기구와 플라스틱 장비의 살균에 사용됨
- 에틸렌옥사이드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자극, 메스꺼움, 구토, 설사, 두통, 현기증, 피로, 근육 약화, 일광 화상 등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음
- 미국 환경 보호국은 EtO를 흡입하면 발암성이 있다며, 림프계 암과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WHO/FAO 산하 국제기구인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은 EtO 잔류량의 상한치를 설정하지 않아 국가별로 규정이 다름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은 공식 입장을 통해 예방적 조치로 수입업자들에게 프랑스산 하겐다즈 브랜드 바닐라 아이스크림 제품의 유통/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지시했음

IV | FTA 이행이슈 관련

(해당없음)